

순천대학교 교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규정

제정 1996. 9. 16

개정 2007. 6. 2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에 의하여 순천대학교교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한 학기이상의 강의를 면제받아야 할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총장의 추천에 의해 정부기관·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심사하여 선발된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여행의 목적과 필요성
2. 여행의 적합성
3. 여행기간 및 여행시기의 적합성
4. 여행인원의 적합성
5. 초청자 및 재정보증서의 적격 여부
6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위원회는 교무처장·학생처장 및 기획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인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 (개정 2007. 6. 26.)

제4조(위원장의 임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교무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부 칙(1996. 9. 16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6. 26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